(뉴스레터) IRB 2020-03호
(제공일) 2020.07.03.(금)

건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
연구자 안내서

1. 신규심의 신청 시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등의 내용은 과거형이 아닌, 미래형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.

: 생명윤리법 제15조 의거하여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(사전심의 원칙)

2.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의 기관명은 약자가 아닌, Full Name으로 기재해 주세요.

: 대전시 있는 K대학, B요양원, C병원 등 (X)

3.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, 녹음, 녹화의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는 연구는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상에 안내 문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.

4. IRB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, IRB 심의 전에 연구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.

: IRB 심의 전 연구가 진행되었을 경우 신규심의가 불가합니다.

5.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모집하지 않도록 합니다.

: 종료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심의 시에 연구승인이 철회 될 수 도 있습니다.

6.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

: 변경사항의 예로는 연구제목, 연구대상자 수 변경, 설문지 문항 변경 및 추가, 공동저자 추가 등입니다.

7. 승인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1년 이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지속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

: 지속심의 접수 시 지속심의 신청서, (현재까지 진행된)연구 결과보고서, 향후 연구계획서, 연구대상자 서면동의서 사본(자료수집이 이루어진 경우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문의사항 :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(☎ 042-600-8466 / kirb@konyang.ac.kr)